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무순위(임의공급3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282-9996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민영	비규제지역	없음	6개월(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계약체결
일정	24.08.02.(금)	24.12.24.(화)	24.12.30.(월)	25.01.03.(금)	25.01.04.(토)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시 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24.(호)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10228 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8.02.(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372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임의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하더라도,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84A 주택형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임의공급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4.12.30.(월)	25.01.03.(금)	25.01.04.(토)	25.01.04.(토)
방 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09:00 ~ 17:30)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09:00 ~ 17:30) - PC: <u>www.applyhome.co.kr</u>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 게시)	■ 사업주체 견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1 : 10:00 ~ 12:00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용인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내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시(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무순위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발표일(2024.08.22.)로부터 6개월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126-13일원 (A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8층 14개동 총 1,681세대 중 잔여 14세대

■ 입주시기 : 2027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ᄌᄗᇌᆡᄔᆠ	ㅁ톄	주택형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주택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동	호
					1001	401, 2001
					1002	401, 901
	01	059.9825B	59B	10	1003	1801, 1901
					1007	501, 601, 1501
2024910228					1012	401
2024910226		084.9993A		_	1003	103
	02		84A		1005	301
	02		0 4 A	4	1008	301
					1009	101
		합 계		1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공급	금액		계약	∃ (5%)			중도금(60%)			잔금(35%)			
약식 표기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해당 세대수		-11-111	71.4.11	LJ =1 . II	-11	1차	2차	1차(2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입주
·	(, _ /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5.06.16	2025.11.14	2026.05.15	2026.10.15	2027.03.15	지정일			
	1001동 1호	4층	3	221,100,000	250,400,000	-	471,500,000	5,000,000	18,575,000	94,300,000	47,150,000	47,150,000	47,150,000	47,150,000	165,025,000			
59B	1002동 1호 1003동 1호 1007동 1호	5-15층	4	223,500,000	253,000,000	-	476,500,000	5,000,000	18,825,000	95,300,000	47,650,000	47,650,000	47,650,000	47,650,000	166,775,000			
	1012동 1호	16층 이상	3	225,800,000	255,700,000	-	481,500,000	5,000,000	19,075,000	96,300,000	48,150,000	48,150,000	48,150,000	48,150,000	168,525,000			
044	1003동 3호 1005동 1호	1층	2	257,400,000	291,400,000	-	548,800,000	5,000,000	22,440,000	109,760,000	54,880,000	54,880,000	54,880,000	54,880,000	192,080,000			
84A	1008동 1호 1009동 1호	3층	2	272,400,000	308,400,000	-	580,800,000	5,000,000	24,040,000	116,160,000	58,080,000	58,080,000	58,080,000	58,080,000	203,28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및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임의공급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우선 하오니 숙지하시어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 계좌	예금주				
1차 계약금	우리은행	1005-104-542171	코리아신탁(주)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 상기 1차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차계약금, 중도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분양대금 관리계좌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010101홍길동'으로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에 제출 바랍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59B	84A
공급금액	24,500,000	33,200,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금액은 분양주택 발코니 확장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이후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동주택(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가구 설치(형별 상이), 확장 부위 마감 연장, 거실 우물천장 확대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 시 인ㆍ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환기구, 급배수관,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건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온도조절기, 전기/통신분전반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 및 바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계좌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납입시기	계약시	2025.11.14	입주지정기간	계약금	우리은행	1005-104-565365	코리아신탁(주)
납입금액	공급금액의 10%	공급금액의 10%	공급금액의 80%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	 며(가상계좌)

- 상기 계약금 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관리계좌(모계좌)입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내에 발코니확장비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중도금·잔금 납부 :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세대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기일과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 하였더라도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흠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1.03.(금) ~ 2025.01.12.(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1.03.(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구분	당첨자	예비입주자	
일시	25.01.04.(토) 10:00 ~ 12:00	25.01.04.(토) 13:00 ~ 14:00	
장소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1)		

■ 계약자 제출 서류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신분증	계약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무순위(사후) 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공통서류	계약자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위임장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무통장입금 및 모바일 뱅킹으로 입금 가능하오니, 1일 이체한도 및 공인인증서 등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⁷ 유의사항

■ 참고사항

-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공동주택의 임의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9B 주택형 제외)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호	㈜남동타운피에프브이	(주)대우건설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제비동 514호(동천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로4가)
법인등록번호	134511-0513497	110111-2137895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